

그 밖의 사항은 김해고용센터 모성보호담당자 ☎ 055-330-6438~9로 확인바랍니다.

2020년 육아휴직급여 신청(처리기간:공휴일 제외 14일)

○ 신청요건

-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(토요일 무급일 경우 토요일 제외)
-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동시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함.
-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(휴직개시예정일)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부여가 의무적은 아님.

○신청시기

- *육아휴직시작일 **한 달 이후부터**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
- *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,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안에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

-신청센터

사업장관할센터나 본인주소지 관할센터 둘 다 가능

-필요서류(출력:고용보험(www.ei.go.kr)-자료실-서식자료실)

- 1.육아휴직(육아기근로시간단축) 급여 신청서(근로자 작성)
- 2.육아휴직(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) 확인서(사업장 작성, 근로자 확인서명)
- 3.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(휴직전 3개월이상),연봉계약시 근로계약서도 첨부
- 4.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

-2회차 이후 서류접수방법(2회차 이후:)

- 1.인터넷접수

고용보험(www.ei.go.kr)공인인증서 회원가입-로그인-개인서비스-모성보호-육아휴직급여/
모바일접수가능(고용보험앱다운)

- 2.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

-지급금액

-19.01.01.이후 육아휴직의 경우에는

동일 영아에 대하여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% 지원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,
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%지원(상한 120만원, 하한 70만원), 급여중 일부(25%)는 복
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

※ 그 밖의 사항은 김해고용센터 모성보호담당자 055-330-6438~9로 문의바랍니다.